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25
----------	-------

발의연월일 : 2024. 1. 19.

발 의 자 : 태영호 · 송석준 · 권영세
이명수 · 김승수 · 안철수
김형동 · 지성호 · 윤상현
하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의 임원으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단의 상근이사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교섭단체가 동수로 이사를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상근이사 구성에 있어 여야 추천 인원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2명으로 명시하고,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동일하게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재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이사장 1명”을 “이사장 1명과 상근이사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상근이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상근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u>이사장 1명</u> 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 <u>이사장 1명과 상근이사 2명</u> -----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상근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과 <u>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u> 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 <u>상근이사</u> -----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